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형수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2530

발의연월일: 2020. 7. 30.

발 의 자: 박형수·윤주경·엄태영

김영식・윤두현・조수진

서일준 · 김석기 · 김형동

구자근 의원(10인)

제안이유

국민의 대표자를 선출하는 선거제도는 대의민주주의의 기본이라고할 수 있음. 이에 선거제도는 신인, 기성정치인 상관없이 모든 후보자뿐만 아니라 유권자인 국민에게도 민주적이고 합리적이어야 함. 그렇지 아니한 경우 공정 경쟁이 저해됨은 물론, 선거 내용에 있어 국민의신뢰를 잃어 종국적으로 자유민주주의 가치까지 훼손되기 때문임.

선거 여론조사의 경우 동일 선거에 대해 수시로 여론조사를 실시하여 국민 불편을 가중시키고 일부 후보자에 유리한 결과를 도출 및 공표하는 등 선거여론조사의 취지를 왜곡하는 사례가 있어 이에 대한합리적 보완이 필요함.

반면 말로 하는 선거운동과 명함 배부 방식의 선거운동은 선거 과열 등 부작용을 초래할 위험성이 적어 다른 선거운동보다 일찍 허용하여 선거운동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할 필요가 있음.

한편, 현행법상 선거일 전 5일부터 2일간 실시하는 사전투표는 사전투표기간과 선거일과의 간격에 따라 후보자로서는 법상 정해진 선거운동 기간을 보장받지 못하게 되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사전투표기간과 선거일과의 간격을 최대한 줄여 후보자에게 주어진 법상 선거운동기간을 최대한 보장하고 유권자의 최종의사가 왜곡되지 않고 올바르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선거여론조사, 홍보방법에 따른 선거운동기간 확대, 사전투표일에 관한 문제점을 합리적으로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말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와 자신의 성명·사진·전화번호·학력·경력, 그 밖에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길이 9센티미터 너비 5센티미터 이내의 명함을 직접 주는 행위는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 전일까지 허용함(안 제59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 나.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자체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선거일 전 120일부터 선거일까지 동일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4회 이상 실시할 수 없도록 함(안 제108조제13항신설).
- 다. 사전투표기간을 선거일 전 5일부터 2일간에서 선거일 전 3일부터 2일간으로 변경함(안 제148조제1항 본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4.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 전일까지 말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 5.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 전일까지 자신의 성명·사진·전화번호·학력(정규학력과 이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력을 말한다)·경력, 그 밖에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길이 9센티미터 너비 5센티미터 이내의 명함을 직접 주는 행위. 다만, 선박·정기여객자동차·열차·전동차·항공기의 안과 그 터미널·역·공항의 개찰구 안, 병원·종교시설·극장의 안에서 주는 행위는 그러하지아니하다.

제60조의3제1항제2호 및 제6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108조제13항 및 제14항을 각각 제14항 및 제1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누구든지 선거일 전 120일부터 선거일까지 동일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선거명, 조사목적, 조사지역, 조사대상이 동일한 것을 말하며, 그 구체적인 기준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를 4회

이상 실시할 수 없다. 다만,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자체적으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48조제1항 본문 중 "5일"을 "3일"로 한다.

제218조의14제1항제1호 중 "제59조제2호·제3호"를 "제59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로 한다.

제256조제3항제1호파목 중 "제출하지 아니한 자 또는 같은 조 제10항을 위반하여 여론조사를 한 자"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같은 조 제10항 또는 제13항을 위반하여 여론조사를 한 자"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동일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횟수 산정에 관한 적용례) 제10 8조제1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선거일 전 120일부터 선거일까지 동 일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횟수 산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실시하 는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부터 적용한다.

제3조(사전투표소 설치에 관한 적용례) 제148조제1항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선거인명부를 작성하는 선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혅 행 개 정 아 제59조(선거운동기간) 선거운동은 제59조(선거운동기간) ----선거기간개시일부터 선거일 전 일까지에 한하여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 지 아니하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 전일까지 말로 선거운동을 하 는 경우 <신 설> 5.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 전일까지 자신의 성명·사진· 전화번호·학력(정규학력과 이 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력을 말한다)·경력. 그 밖에 홍보에 필요한 사항 을 게재한 길이 9센티미터 너 비 5센티미터 이내의 명함을 직접 주는 행위. 다만, 선박· 정기여객자동차·열차·전동차· 항공기의 안과 그 터미널·역· 공항의 개찰구 안, 병원·종교 시설·극장의 안에서 주는 행

제60조의3(예비후보자 등의 선거 운동) ① 예비후보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 다.

- 1. (생략)
- 2. 자신의 성명·사진·전화번호· 학력(정규학력과 이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 력을 말한다. 이하 제4호에서 같다)·경력, 그 밖에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길이 9 센티미터 너비 5센티미터 이 내의 명함을 직접 주거나 지 지를 호소하는 행위 다만, 선 박·정기여객자동차·열차·전동 차·항공기의 안과 그 터미널· 역·공항의 개찰구 안, 병원·종 교시설·극장의 안에서 주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 3. ~ 5. (생 략)
- 6. 전화를 이용하여 송·수화자
 <삭 제>

 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

9	위는	그	러하지	아ા	하다	<u>.</u>
제60	조의	3(0]비후	보자	등의	선거
순	동)	1				
_						

1. (현행과 같음) <삭 제>

3. ~ 5. (현행과 같음) <삭 제> ② ~ ⑥ (생 략)
제108조(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
지 등) ① ~ ⑫ (생 략)
<신 설>

<u>③</u>·<u>④</u> (생 략)

제148조(사전투표소의 설치) 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일 전 5일부터 2일 동안(이하
"사전투표기간"이라 한다) 관할
구역(선거구가 해당 구·시·군의
관할구역보다 작은 경우에는
해당 선거구를 말한다)의 읍· 면·동마다 1개소씩 사전투표소
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
만, 읍·면·동 관할구역에 군부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108조(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
지 등) ① ~ ⑫ (현행과 같음)
③ 누구든지 선거일 전 120일
부터 선거일까지 동일한 선거
에 관한 여론조사(선거명, 조사
목적, 조사지역, 조사대상이 동
일한 것을 말하며, 그 구체적인
기준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
칙으로 정한다)를 4회 이상 실
시할 수 없다. 다만, 선거여론
조사기관이 자체적으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경
우는 제외한다.
<u>⑭</u> ・ <u>⑮</u> (현행 제13항 및 제14
항과 같음)
제148조(사전투표소의 설치) ① -
<u>3일</u>

대	밀집지	1역	등이	있는	경우에
는	해당	지	벽에	사전투	투표소를
추기	가로 설	<u></u> 회·	운영형	할 수	있다.

② ~ ⑥ (생 략)

- 제218조의14(국외선거운동 방법에 관한 특례) ① 재외선거권자(재외선거인명부등에 올라있거나 오를 자격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대상으로 하는 선거운동은 다음 각호에서 정한 방법으로만 할 수있다.
 - 1. <u>제59조제2호·제3호</u>에 따른 선거운동
 - 2. ~ 6. (생략)
 - ② ~ ⑦ (생 략)
- 제256조(각종제한규정위반죄) ①
 ② (생 략)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者는 2年 이하의 懲 役 또는 400萬원 이하의 罰金 에 處하다.
 - 選擧運動과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者
 - 가. ~ 타. (생 략)
 - 파. 제108조제1항을 위반하여

	외선거운동	
 1. <u>제59조제2</u>	호부터 제5호	 <u>5 까 지</u> -
2. ~ 6. (현호 ② ~ ⑦ (현 제256조(각종제 · ② (현행과	행과 같음) 한규정위반3	탁) ①
(3) 1		
 가. ~ 타. 파	(현행과 같음	<u>)</u>)

여론조사의 경위와 그 결 과를 공표 또는 인용하여 보도한 자, 같은 조 제2항 을 위반하여 여론조사를 한 자, 같은 조 제6항을 위 반하여 여론조사와 관련 있는 자료일체를 해당 선 거의 선거일 후 6개월까지 보관하지 아니한 자, 같은 조 제9항을 위반하여 정당 한 사유 없이 여론조사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또는 같은 조 제10항을 위반하여 여론조 사를 한 자

하. ~ 너. (생 략)

2. ~ 4. (생략)

④·⑤ (생 략)

제출하지
아니한 자, 같은 조 제10항
또는 제13항을 위반하여 여
론조사를 한 자
하. ~ 너. (현행과 같음)
2. ~ 4. (현행과 같음)
④·⑤ (현행과 같음)